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78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정혜경 · 강득구 · 전종덕
이용우 · 김준형 · 윤종오
서미화 · 용혜인 · 민병덕
손 솔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

수령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주민 등의 의견을”을 “의견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때 누구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으로, “들어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이”를 “국민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주민 등의 의견을”을 “의견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누락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 등의 의견을”을 “의견을”로, “한다”를 “하며 이때 누구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 등이 의견의”를 “의견의”로, “주민 등의 의견

을”을 “의견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 등의 의견을”을 “의견을”로, “한다”를 “하고, 이때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민에 대한 공고”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 등의 의견을”을 각각 “의견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누락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중 “주민 등의 의견”을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 등의 의견을”을 “의견을”로, “한다”를 “하며, 이때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 등이 의견의”를 “의견의”로, “주민 등의 의견을”을 “의견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을</u>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 ----- ----- ----- ----- <u>의견을</u>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u>주민 등의 의견</u>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u>주민의</u>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u>의견</u> 수렴) ① ----- ----- ----- ----- ----- <u>개최하여야</u> <u>하며 이때 누구든지 전략환경</u> <u>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u> -----

<후단 신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
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
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누락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이

[illegible]

③

의견을

④ _____

_____ 의견 _____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의견 재수렴) ① -----

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

--의견을-----하며
이때 누구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의견의-----
-----의견을-----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견 수렴) ① -----

-----의견을-----

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
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
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
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하고, 이때 누구든
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
의 의견을 누락하지 않도록,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보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의견-----

-----공고-----

-----.

③ -----

-----의견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의견을-----
-----.

④ -----
-----의견-----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견 재수렴) ① -----

-----의견을-----하며,
이때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의견의

<u>등이 의견의</u>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u>주민 등의 의견을</u>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u>의견을</u>----- -----. ③ (현행과 같음)
---	--